

제 1177 호
1985. 9. 16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영 모 관
편집인 : 공 부 관 이 광 우
전화 : 731-6111-3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: 735-3337

시 보

차 례

◎ 조 례

제 2025 호 : 서울특별시공공용지에 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 * 대한재산세
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 3

◎ 고 시

제 605 호 :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지적승인 3

제 606 호 : 연탄책임공급구역지정 4

제 607 호 : 주택개발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5

제 608 호 : 을지로 2 가계 10 지구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고시 5

제 609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, 유통업무설비) 시행허가 10

< 이 면 적 속 >

공										
람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1629

제 610 호 :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지적승인 11

◎ 공 고

제 537 호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 12

◎ 사 령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85. 9. 16

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2025 호

서울특별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불균일과세) 재산세 납기 개시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동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후 5년 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

법 제 188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 분의 50 을 경감한다.

제 3 조 (사무처리의 위임) 이 조례에 의한 재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사무처리는 당해 물건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
제 4 조 (면제신청등) ①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 구청장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불균일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경감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05 호

도시계획시설 (학교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549 호 (' 85.

8.14)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조에 의거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'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'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관계이해인에게 보인다.

1985. 9. 16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시설명	위 치	규 모		비 고
		당 초	변 경	
학 교	서대문구홍은동 356-9 일대	39,220 ㎡	40,180 ㎡	층 960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06 호

연탄책임공급구역 지정

석탄수급 조정에 관한 임시초치법 시행령 제 4조 제 1항 제 1호, 제 9조 제 6호 및 동력자원부 고시 제 85-169(85.9.10)호에 의거 연탄책임공급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한다.

1985. 9. 16
서울특별시장

연탄공급책임지역 지정

1. 1호 및 5호연탄

시도별	권역별	공장소재지	공 급 구 역
서울특별시	서울	서울특별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특별시 ○ 경기도 광명시, 성남시, 안양시 석수동, 부천시 고강동, 역곡동, 의정부시 장곡동, 호원동, 남양주군, 여주군, 시흥군, 파주군(문산읍제외), 고양군, 광주군, 가평군, 양평군, 이천군, 김포군, 강화군 ○ 다만, 안양시 석수동, 시흥군은 수원권역에서, 부천시 고강동, 역곡동은 인천권역에서, 의정부시 장곡동, 호원동은 의정부권역에서, 여주군은 여주권역에서, 파주군(문산읍제외)은 파주권역에서 각각 공급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07 호

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

1. 서울특별시공고 제 291호 (85.5.13)로 관리처분계획 공람공고한 응암 4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41조, 제 42조, 제 6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 5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동구역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한다.
2. 본 인가내용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등에게 개별 통보할 것이나, 미수령자에게는 본 고시로 갈음되며 관계도서는 은평구청, 주택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가. 인가내용

- 명칭 :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
- 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- 위치 : 은평구응암동 233번지일대
- 면적 : 131,840 평방미터
- 내역 : 별첨 고시문 참조
- 관계도서 : 은평구청 주택과에 비치 공람.

1985. 9. 16.

서울특별시장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08 호

울지로 2가제 10지구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고시

1. 서울시 고시 제 62호 (84.2.3)

로 인가된 울지로 2가 제 10 지구의 관리처분계획을 도시재개발법 제 41조 2항에 의거 변경인가하였기 이를 동법제 16조 및 동법시행령제 2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5. 9. 16.

서울특별시장

- 가. 사업의 명칭 : 울지로 2가 제 10 지구 재개발사업
- 나. 시행구역 : 서울특별시 중구 울지로 2가 9-1 일대 28필지
- 다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
 - 1)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울지로 2가 9-1번지
 - 내외홍업(주) 대표이사 김성우
- 라. 시행면적 : 4,857.9 ㎡
- 마. 시행기간 : 1979.7.24 ~ 1985.12.31
- 바. 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
 - 1) 대지 : 4,009.3 ㎡
 - 2) 건축시설 : 33,459.39 ㎡
- 사. 분양설계
 - 1) 토지 : 새로이 조성되는 대지는 시행자와 분양신청자가 합의한 바에 따른 분양할 선물의 전용면적을 서울시 가격평가위원회의 평가지수율 기준으로한 평가비용

<p>(내외공업 : 90.7698%, 동원산업 : 9.2802%)에 의하여 분양할 대상의 건물의 각층에 지분소유의 방법으로 분양하며 그에 해당하는 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한다.</p> <p>2) 건축 및 부대시설 : 새로이 조성되는 건축 및 부대시설은 시행자와 분양신청자가 협의한 바에 따라 지상 4, 5층의 전용면적을 분양신청자가 독립 소유하도록 분양하며 공유면적은 전체 전용면적 비율(내외공업 : 87.8003%, 동원산업 : 12.1997%)에 의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한다.</p> <p>3) 사업비용의 부담 :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건축비, 토지매입, 청산비, 공용시설비, 공공시설부담금 및 기타 조세 공과금등 모든 비용은 시행자의 책임으로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분양신청자는 종전의 토지 및 건물 이외의 사업비용을 일체 부담하지 아니한다.</p>					<p>4)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자의 종전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매입 청산한다.</p> <p>아. 분양대상자의 주소, 성명 : 생략 (종전과 동일)</p> <p>자.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</p> <p>1) 종전토지 및 건물의 명세 (생략)</p> <p>2)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 (별첨 1)</p> <p>차.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(별첨 2)</p> <p>카. 분양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(생략)</p> <p>타.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 (별첨 3)</p> <p>파. 법제 43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(해당무)</p>			
<p>(별첨 1)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가격</p> <p>가.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건축시설 및 대지명세 (단위 : m²)</p>								
건축 시설					대 지			
총 별	구 분	합 계	내외공업	동원산업	합 계	내외공업	동원산업	
합 계	계	33,459.39	29,377.45	4,081.94	4,009.3	3,639.23	370.07	
	전용면적	21,208.36	18,621.01	2,587.35				

건 축 시 설					대 지		
층 별	구 분	합 계	내외공업	동원산업	합 계	내외공업	동원산업
	공용면적 관 리 실	12,176.03 75	10,690.59 65.85	1,485.44 9.15			
지하 3 층	공용면적	3,646.07	공 3,201.26	공 444.81	-	-	-
지하 2 층	공용면적	2,901.17	공 2,547.24	공 353.93	-	-	-
	계	3,812.22	3,699.21	113.01			
지하 1 층	전용면적	2,885.87	2,885.87	-	996.98	996.98	-
	공용면적	926.35	공 813.34	공 113.01			
	계	1,585.18	1,486.49	98.69			
지상 1 층	전용면적	776.21	776.21	-	341.60	341.60	-
	공용면적	808.97	공 710.28	공 98.69			
	계	1,558.93	1,517.24	41.69			
지상 2 층	전용면적	1,217.20	1,217.20	-	321.41	321.41	-
	공용면적	341.73	공 300.04	공 41.69			
	계	1,558.93	1,530.78	28.15			
지상 3 층	전용면적	1,328.15	1,328.15	-	213.33	213.33	-
	공용면적	230.78	공 202.63	공 28.15			
	계	1,558.93	263.16	1,295.77			
지상 4 층	전용면적	1,259.20	-	1,259.20	180.10	-	180.10
	공용면적	299.73	공 263.16	공 36.57			
	계	1,558.93	202.63	1,356.30			
지상 5 층	전용면적	1,328.15	-	1,328.15	189.97	-	189.97
	공용면적	230.78	공 202.63	공 28.15			
	계	1,558.93	1,522.36	36.57			
지상 6 층	전용면적	1,259.20	1,259.20	-	180.10	180.10	-
	공용면적	299.73	공 263.16	공 36.57			
	계	1,558.93	1,530.78	28.15			
지상 7 층	전용면적	1,328.15	1,328.15	-	189.97	189.97	-
	공용면적	230.78	공 202.63	공 28.15			
지상 8 층	계	1,558.93	1,522.36	36.57			

건 축 시 설					대 지		
층 별	구 분	합 계	내외홍업	동원산업	합 계	내외홍업	동원산업
지상 8 층	전용면적	1,259.20	1,259.20	-	180.10	180.10	-
	공용면적	299.73	공 263.16	공 36.57			
	계	1,558.93	1,530.78	28.15			
지상 9 층	전용면적	1,328.15	1,328.15	-	189.97	189.97	-
	공용면적	230.78	공 202.63	공 28.15			
	계	1,558.93	1,522.36	36.57			
지상 10 층	전용면적	1,259.20	1,259.20	-	180.10	180.10	-
	공용면적	299.73	공 263.16	공 36.57			
	계	1,558.93	1,522.36	36.57			
지상 11 층	전용면적	1,259.20	1,259.20	-	180.10	180.10	-
	공용면적	299.73	공 263.16	공 36.57			
	계	1,558.93	1,522.36	36.57			
지상 12 층	전용면적	1,259.20	1,259.20	-	180.10	180.10	-
	공용면적	299.73	공 263.16	공 36.57			
	계	1,558.93	1,530.78	28.15			
지상 13 층	전용면적	1,328.15	1,328.15	-	189.97	189.97	-
	공용면적	230.78	공 202.63	공 28.15			
	계	1,558.93	1,522.36	36.57			
지상 14 층	전용면적	1,259.20	1,259.20	-	180.10	180.10	-
	공용면적	299.73	공 263.16	공 36.57			
	계	1,558.93	1,522.36	36.57			
지상 15 층	전용면적	1,248.66	1,202.94	45.72	115.38	115.38	-
	공용면적	873.93	873.93	-			
	관리사무실	299.73	공 263.16	공 36.57			
		75	공 65.85	공 9.15			

나.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

분양대상자	대 지		건 축 시 설		추산가액
	면 적(㎡)	추산가액	층 별	면 적	
내외홍업(주)	3,639.23 (1,100.86평)	13,210,320,000	지하 1, 지상 1-3 지상 6-15	29,377.45 (8,886.68평)	19,583,600,000

분양대상자	대 지		건 축 시 설		추 산 가 액
	면 적(㎡)	추 산 가 액	층 별	면 적	
동원산업(주)	370.07 (111.95평)	1,343,400,000	층과 공용부분 지상 4, 5 층과 공용부분	4,081.94 (1,234.79평)	2,721,500,000
합 계	4,009.3 (1,212.81평)	14,553,720,000		33,459.39 (10,121.47평)	22,305,100,000

별첨 2 : 분양대상자의 종전의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

대상자	종 전 토 지 및 건 물			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명 세	
	지 번	지 목	면 적	권 리 내 용	권 리 자
내 외 총 업	중구올지로 2 가 3-1	대	222.4평	원전대지에근저당 권 (채권최고액)	중구남대문로 2 가 10-1
	3-2	"	4평	910,000,000	서울신탁은행
	4-2	"	9.1평	7,284,000,000	남대문로 2 가 130 (한일은행)
	7	"	51평	770,000,000	남대문로 1 가 111 (상업은행)
	8	"	80평	1,500,000,000	중구명동 1 가 65 중앙투자금융(주)
	9-1	"	448.5평	17,500,000,000	올지로 1 가 181
	9-2	"	3		한국외환은행
	9-12	"	0.9평		
	9-13	"	3.5평		
	중구수하동 50-6	"	1.3평		
	65-3	"	45.4평	750,000,000	중구올지로 2 가 9-1
	65-4	"	3.8평		금성투자금융(주)
	64	"	34 평		
남대문로 1 가 25-1	"	53 평			
27-1	"	19.9평			
28-1	"	2.8평			

별첨 3 :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명세					
시 설 명	지 번	지 목	지 적	평 가 액	소 유 자
도 로	수하동 65-3 나	대지	83.9 ㎡	71,315,000	내 외 흥 업
"	수하동 65-4	"	12.5 "	10,677,684	"
도로및공용주차장	" 64 나	"	95.2 "	58,072,000	"
"	" 64 다	"	13.1 "	7,991,000	"
도로및공용주차장	남대문로 1가 25-1	"	83 "	120,350,000	"
소 계			287.7 ㎡	268,405,684	
도 로	수하동 27-5	대	128.5 ㎡		내 외 흥 업
도 로	삼각동 111-1	대	432.4 "		내 외 흥 업
소 계			560.9 "		
합 계			848.6 "		

*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명세는 종전과 동일.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09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 유통업무
설비) 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공고 491 호 (85.8.26)
및 등 공고 479 호 (85.8.16) 로 신

문공고한 도봉구 중계동 411-1 번지 일
대 학교시설과 월계동 87 번지 유통
업무 설비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
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 규정
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하고
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
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9. 16

서울특별시장

○ 사업개요

구분	시 설 명	학 교	유 통 업 무 설 비
사업시행지	도봉구중계동 411-1 번지일대	도봉구월계동 87번지	도봉구월계동 87번지
사업의종류	도시계획사업 (학교)	도시계획사업 (유통업무설비)	
대 지 면 적	3,402 ㎡	4,271 ㎡	
건 축 면 적	464 ㎡	149.68 ㎡	

구분	시설명	학 교	유 통 업 무 설 비
건축연면적	464 ㎡		285.76 ㎡
사업시행자	청암고등기술학교교장 추상욱		대한통운(주) 대표이사 안철환
사업기간	'85.10 - '86.9.30		'85.10 - '86.10.30

기타 설계도서: 생략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610호

도시계획시설(학교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549호(85.8.14)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된,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면목동 49-3번지 일대에 대하여,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고져, 도시계획법 제 13조

와 같은별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학교)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.

1985. 9. 16.
서울특별시 장

가. 도시계획시설조사

구분	시설명	위치	규모 (㎡)		비고
			기정	변경후	
변경	학교 (건문대학교)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면목동 49-3번지 일대	12,699.7	12,553.7	도면 정정 없이 면적 정정 (감 141 ㎡)

○ 승인도면: 따로붙임 (생략)

공 고

⊙서울특별시공고제 537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)
실시계획공람공고

1. 건설부고시 제 476 호 (70.10.2) 로 지적고시된 한남동 644번지 - 뉴용산호텔간 도로개설공사의 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응하고져 이에 공고한다.
2.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
3. 관련도서는 용산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

건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한다.

1985. 9.16.

서울특별시장

공 랑 개 요

- 가. 사업시행지 : 서울시용산구한남동 644 번지 - 한남동뉴용산호텔간
 - 나. 사업의종류 및 명칭 : 한남동 644 번지 - 뉴용산호텔간 도로 개설공사
 - 다. 사업의규모 : B=15 m, L=340 m
 - 라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 - 마.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: 86.1.1-86.12.31
 - 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 : 별첨토지 및 건물조서 참조
 - 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별첨토지 및 건물조서 참조
- 첨부 : 1. 토지조서 및 건물조서 각 1부.

토 지 조 서

연 번	소재지및지번	지 목	면 적 (㎡)	소 유 자 주 소 성 명		소 유 권 의 권 리 명 세
				관 계 인 주 소 성 명		
1	한남동 666-24	대	2	보광동636-8	구 현 자	
2	한남동 666-23	도	31	한남동257	석 용 출	
3	한남동 666-19	대	57	강남구반포동46-2	여 운 장	
4	한남동 666-13	대	266	한남동665-2	진 양 근	

연 번	소재지및지번	지 목	면 적 (㎡)	소 유 자 주 소 성 명		소 유 권 의 이 외 의 권 리 명 세
				관 계 인 주 소 성 명		
5	한남동 666-20	대	169	후암동30-18	정 명 섭	근저당권
6	한남동 667-205	"	8	중구신당동368-16	박 진 규	
				대전시은행동48-1	주식회사	
7	한남동 665-32	"	77	강남구서초동산90	이 길 호	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 (4건)
				우성아파트10동1503호		
				용산구후암동30-18	정 명 섭	
8	한남동 666-18	"	10	강남구반포동46-2	이 운 창	국
9	한남동 738-29	도	3,000			

건 물 조 서

일련 번호	소재지지번	물건의 종 류	구 조 및 구 격	면 적 (㎡)	실제이용 상 황	소 유 자 주 소 성 명		소 유 권 의 이 외 의 권 리 명 세
						관 계 인 주 소 성 명		
1	한남동 738-29	건 물	합석도단	91	식 당	한남동 686-1	한전공사	
			세멘벽돌	1.2	수 위 실		장비관리	
2	" 686-4	"	합석도단	357	정비차고	" 732-13	사무소	
			기 와 /	0.7	주 택		유창수	
3	" 738-29	"	목 조	0.7	"	" 686	김 응 립	
4	" 685-43	"	스래트 /	59	"	" 686-20	이 시 락	
			부 려	18	"	" 686-8	구 덕 심	
5	" 738-29	"	기 와 /	47	"	" 686-6	이 등 수	
			목 조	60	"	" 686-20	김 상 일	
6	" 686-6	"	기 와 /	2.8	"			
			세멘부록	5.2	"			
7	" 686-20	"	"	4.6	"			

일련 번호	소재지번호	물건의 종 류	구조 및 규 격	면 적 (㎡)	실제이용 상 황	소 유 자 주소 성 명		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명 세
						관 계 인 주소 성 명		
8	한남동 684-91	건 물	세멘벽돌/ 스라브	0.5	주 택	한남동 684-91 오이백 강남구논현동 영동단위 205-4, 5 농 협	근저당권	
9	" 738-29	"	기 와/ 세멘부력	60	"	한남동 686-8 정대용		
10	" 686-8	"	기 와/ 세멘벽돌	56	"	" 686-8 이정용		
11	" 686-13	"	스레트/ 세멘부력	11	창 고	" 686-13 전양근		
12	" 586-17	"	스레트/ 세멘부력	16	사 무 실	" 686-13 "		
13	" 686-8	"	기 와/ 세멘벽돌	58	주 택	" 686-8 구현자		

사 령

◎ 1985년 9월 13일자

령계 335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국 수도공사와 과장
지방토목기과 김 태 준

토목기과에 입함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국 토목과 과장에 포함.

대 통 령

◎ 1985년 9월 16일자

령계 336 호
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홍 점 선	전자계산소 파견근무를 명함 ('85.9.17 ~ '86.3.16)	성동구 성수1가2동	지방행정서기보

◎ 1985년 9월 17일자		령제 337 호	
성 명	발 령 사 항	현 부 서	직 급
박형수	감사관사회지도담당관	서대문구민방위과	지방행정주사
박정호	상하수국업무과	종합민원실	"
오철원	죽도수원지	동작구건설관리과	"
김중영	용 산 구	내무국총무과	지방행정서기
<p>서 울 특 별 시 장</p>			